

○ 食生活改善方向 ○

食品需給計劃으로 体系 확립



李 一 根

<農水產部食生活改善課長>

營養水準向上을 目標로 설정

人類文化의 發達과 함께 끊임없이 變遷하고 發展하는 人間의 食生活形態는 그 形態의 變遷이 어떻게 되던 항상 求心點이 되고 源泉的 役割을 하는 機能이 되는 것은 사람이 自身의 生命을 維持할 수 있도록 배를 채우고 適切한 營養을 섭취하고자 하는 것이 根本的 慾求가 各社會의 發展段階에서 生活樣式의 한 形式을 갖추어 나타난 것이 바로 그 社會의 食生活形態인 것이다.

또한 古代人の 食生活은 그들의 生活圈內에서 生產되는 여러 가지 食品들을 原料로 하는 飲食物의 種類가 多樣하고 複雜한 것이었으나 營養의 으로는 考慮되지 않고 배를 불리고 嗜好를 中心으로 한 食事を 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經濟社會가 發展함에 따라 人間의 食生活은 複雜하고 形式化한 傳統的 食生活樣

式이 漸次 脫皮 되고 營養과 經濟性을 考慮한 實際的 食生活로 發展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最近의 食生活發展形態는 簡素化와 平準化와의 特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古代의 食生活은 貴族이나 富裕層은 嗜好爲主와 食道樂的 食生活을 한데 반하여 一般庶民에 있어서는 배를 채우기 위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一平生 勞動을 해서 食生活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生活을 營爲하여 왔던 것이다. 現在에 와서는 貧富의 큰 차없이 個人的 均衡 있는 身體의 維持와 健康保存을 爲한 食生活을 하고자 努力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國民의 體位와 體力を 向上시켜 國際社會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國力培養의 기틀을 構築하고자 많은 나라들은 國民食生活을 极히 重要視하여 그 改善을 위한 努力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努力은 各國마다의 食糧政策 내지 食生活改善施策속에 반영시켜 뒷받침

하고 있으며 自國國民의 既存食性, 食糧生產의 潛在的能力, 食糧의 輸入 및 國民所得水準과 그 밖의 다른 社會的, 經濟的, 文化的要因等 食糧消費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점을勘案하여 食糧의 需給計劃와 營養目標等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開發途上에 있는 나라들은 自國의 食糧自給度를 얼마나 높일 수 있으며 國民의 營養水準向上을 開發目標로 認定하는가의 程度와 그러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 採擇되는手段의 効率性에 있어서 서로 큰 隔差를 보이기도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經濟開發을 加速化하려면 食生活을 비롯한 生活水準의 다른部門을 改善하려는 努力은 開發途上에 있는 經濟의 可用財源에 過重한 負擔을 주게하고 있으며 經濟成長의 속도를 加速化하는 것과 國民消費生活 및 社會福祉를 當場에 改善하기

위한것과의 두가지 目的 사이에 적은 資源을 어떻게 按配하느냐하는 問題를 놓고 어려운 判斷을 要하게 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食糧需給計劃과 食生活改善方向은 어디까지나 全般的인 國家開發計劃과 符合하여 計劃되어야 하며 또 그것이 一部라는 것을確實히 하여둘 必要가 있는 것이다.

食生活改善 轉機 마련

우리 나라에서 食生活의 改善문제가 제기된 것은 不過 數年前 부터의 이야기이다. 1960年代 까지만 하여도 衣生活이나 住生活에 있어서는 그 發展과 向上이 括目할만 한 것이였으나 衣食住中 가장 重要視 하여야 할 食生活에 있어서는 그 形態에 있어서나 內容에 있어서 별다른 變遷이 없었으며 불어나는 人口의 增

◇ 연도별 양곡수급 상황 ◇

(單位: 1千噸)

| 연도 구분 |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
| 米 谷 | 생 산 | 3,501 | 3,919 | 3,603 | 3,195 | 4,090 | 3,939 | 3,997 |
| | 소 비 | 3,531 | 3,954 | 3,822 | 3,946 | 4,394 | 4,777 | 4,356 |
| | 과 부 족 | △30 | △35 | △219 | △751 | △304 | △838 | △359 |
| 大 麥 | 생 산 | 2,018 | 1,916 | 2,084 | 2,066 | 1,974 | 1,858 | 1,964 |
| | 소 비 | 1,874 | 2,085 | 2,106 | 2,142 | 1,880 | 1,992 | 2,173 |
| | 과 부 족 | 144 | △169 | △22 | △76 | 94 | △134 | △209 |
| 小 麥 | 생 산 | 315 | 310 | 345 | 366 | 357 | 322 | 241 |
| | 소 비 | 774 | 1,110 | 1,476 | 1,621 | 1,559 | 1,754 | 2,300 |
| | 과 부 족 | △459 | △800 | △1,131 | △1,255 | △1,202 | △1,432 | △2,059 |
| 計 | 생 산 | 5,834 | 6,145 | 6,032 | 5,627 | 6,421 | 6,119 | 6,202 |
| | 소 비 | 6,179 | 7,149 | 7,404 | 7,709 | 7,833 | 8,523 | 8,829 |
| | 과 부 족 | △345 | △1,004 | △1,372 | △2,082 | △1,412 | △2,404 | △2,627 |

加斗 점진的인 國民所得의 向上에 따라 쌀을 爲主로 하는 主食의 消費構造는 오히려 合理的인 食生活과는 거리가 먼 白米偏食이 傾向으로 두드러지게 기울어져 쌀의 消費增加가 擴大되어 經濟發展을 위해 安定이 必要한 國民食糧問題에 큰 危脅을 加하였다 것이다. 이로인해 1966年부터 莫大한 量의 비싼 쌀을 導入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또 보리나 밀까지 貴重한 外貨를 浪費해 가면서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를 契機로하여 食糧의 自給自足은 種子의 改良 및 營農技術의 向上과 農業機械化에 依한 增產施策만으로는 達成할 수 없음을 直視하고 米穀의 消費節約과 混粉食實踐을 위한 食生活改善運動을 展開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지난해에와서 더욱 積極化하여 各料食業所에 있어서는 모든 飲食에 보리와 밀을 義務的으로 20%씩 섞어 販賣도록 함과 同時 週2回는 粉食을 實踐하도록 하는 行政命令의 發動과 各家庭 및 學生 도시락에 이르기 까지 混粉食을 履行하도록 하는 汎國民運動을 展開하므로서 1972年度, 一年동안에 592千石(4.13千石)의 쌀을 消費節約하는 劃期的인 成果를 거두어 食生活改善의 轉期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節米운동과 混粉食 유도

1973年度의 食生活改善에 關聯된 食糧政策方向을 간추려보면 다음 세가지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쌀消費節約 施策強化로 쌀 自給化達成을 促進하고

나. 米麥為主의 國民食糧消費構造의 脫皮와 그改善

다. 米麥價格의 隔差維持로서 雜穀消費擴大以上과 같은 政策方向에 따라 國民食生活의

改善方向은 米穀自給의 目標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보다 強力하고 積極的인 節米運動과 混粉食을 誘導固着化시키기 위하여 1973. 3. 14에는 從來의 20% 混食으로 되어 있던 混粉食에 關한 行政命令을 廢止하고 糧穀管理法 第17條 및 第18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飲食販賣業者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을 遵守할 것을 命令하였다.

가. 飲食販賣業者는 營業場所(주방포함)에서 販賣 또는 販賣를 위하여 準備되어 있는 飲食(쌀을 原料로 하는 食事一切)에는 雜穀을 30%以上 混合 하여야 한다.

나. 粉食센타로 指定된 飲食販賣業所와 中華飲食販賣業所에서는 飯食을 販賣하지 못한다.

다. 洋食販賣業所에서는 飯食을 販賣하지 못한다. 다만, “오무라이스” “하이라이스” “카레라이스”等 輕洋食에 있어서는 雜穀 30%를 混合販賣하도록 종래에 볼수었던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라. 每週 水曜日과 土曜日에는 11時부터 17時까지 사이에 쌀을 原料로 하는 飲食을 販賣하지 못한다.

마. 直席 솥밥을 販賣하지 못한다.

바. 쌀을 原料로 하는 菓子類, 茄類 等을 生產販賣하지 못한다.

이와같이 行政命令으로 規制하는 外에도 農水產部長官의 談話文을 通하여 一般家庭에 있어서도 30%以上的 雜穀混食과 하루한끼 粉食을 勸獎하고 있다.

學生들의 도시락은 반드시 混食과 粉食으로 장만하도록 하여 幼年期 食習慣을 굳혀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米麥混合穀(7:3)의 大量放出과 政府保有 보리쌀 및 밀쌀 등의 無制限放出로 國

民의 混食에 따른 雜穀需要를 充分히 뒷받침 해주고 있다.

보리쌀이나 밀쌀의 價格을 쌀값의 折半程度로 維持토록하여 더욱 雜穀消費를 增大하고 쌀을 節減하는 價格政策面에서의 配慮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不要不急한 糧穀의 消費抑制方案으로 술, 菓子, 엿製造에는 쌀의 使用을 禁止하고 있으며 떡쌀 等에 있어서는 30%의 밀가루를 자진하여 섞도록 계속 勸獎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食糧消費構造改善面에서는 쌀의 消費를 漸次抑制하고 國內增產可能品目인 감자, 콩等의 調理法開發普及으로 消費를擴大改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1人當쌀消費量

| 年 度 别 | 年 间 | 1 日 |
|-------|----------|------|
| 1961 | 121.4 kg | 333g |
| 62 | 131.3 | 360 |
| 63 | 117.5 | 322 |
| 64 | 135.2 | 370 |
| 65 | 139.2 | 381 |
| 66 | 122.2 | 335 |
| 67 | 133.5 | 366 |
| 68 | 126.5 | 347 |
| 69 | 127.2 | 348 |
| 70 | 137.5 | 344 |
| 71 | 146.5 | 377 |
| 72 | 132.3 | 362 |
| 73 | 126.6 | |

이 밖에도 調理専門家를 通한 混粉食調理技術의 開發普及과 無料調理講習會開催 飲食業

所의 混粉食, 標準食單制實施와 인스탄트食品의 普及獎勵를 들수 있을 것이다.

綜合食品需給計劃 수립

食糧政策의 窮極的인 目標는 國民이 必要로 하는 食糧과營養을 어떻게 하면 充分히 確保하여 供給해주며 同時に 食生活의 安定과 向上을 圖謀하고合理的인營養管理로 國民保健을 向上하여 國力を 培養하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기 때문에 食糧政策의 基本的인 課題은 어떤 種類의 食糧을 어떻게 確保하여 國民들에게 供給하느냐가 問題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國民食糧을 穀類만을 為主로 한 糧穀需給計劃을樹立하여 왔기 때문에 全體食糧消費構造面이나 營養面에서 많은 모순點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政府는 이를 과감히 是正하는 措置로 앞으로는 穀類를 비롯하여 감자類, 魚肉類, 牛乳, 卵類等을 包含한 各種食品의 綜合된 食品需給計劃으로 推進되고 있으며 國家經濟의 見地에서 여기에는 可及的 國內生產可能食糧資源의 開發을 促進하여 國內生產食糧을 優先토록할 예정이다.

政府는 이를 위해

가. 감자, 고구마, 보리, 菜蔬等의 劃期的增產

나. 果實, 畜產物과 水產物의 增產

다. 食品加工業의 育成

等이 考慮될 것이며 均衡있는 食品消費誘導를 長期的 眼目으로 推進되어 나갈 예정이다. 그렇지만 食品需給計劃의 制度의 體系가 確立되기 前까지는 食品需給속에 國民의 營養目標를 包含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